

글 심는 순서

03 기고문 | 새빛의 꿈과 비전을 사랑하며 • 조은시스템 김승남 회장

04 새빛의 활약

05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07 새빛 뉴스

08 새빛의 법률세상

♥ 새빛이 이겨서 기쁜 사건 |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한 사례 • 이석중 대표

♥ 새빛이 쳐서 아픈 사건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손지성 변호사

♥ 관심이 가는 판례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작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 달라진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새빛만평

♥ 노동법의 제문제 • 임종태 변호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며 • 서철원 변호사

♥ 분할 및 현물출자 과세제도 개정(안)에 대한 小考 • 장재덕 회계사

♥ 최근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와 향후 국내 PF사업에 관한 소견 • 최진석 회계사

24 새빛인의 서재

♥ 12월의 추천도서 |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Firms of Endearment)
라젠드라시 소디어 • 데이비드 울프 • 잭디시 세스<릭스미디어>

♥ 01월의 추천도서 | 흑산 - 김훈 <학교재>

26 새빛마당

♥ 외규장각 도서반환운동의 선구자 고(故) 박병선 박사님을 추모하며

♥ 새빛의 가족이 되면서... • 최소영 사원

♥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소감문 • 성미경 변호사, 권도연 차장

♥ 12월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소감문 • 조은결 변호사

♥ 새빛 복지 이야기 • 성미경 변호사, 장재덕 회계사

♥ 쓱쓱 새빛 영어 • 김근우 변호사

♥ 제 1회 새빛 백일장 대상 • 강현옥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인재채용 모험기를 찾습니다

34 새빛광고

♥ 2월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안내

♥ 고객사 광고

| 새 빛 이 보 내 는 러브 레터 |

통권 03호 발행일 2012년 1월 2일 발행인 법무법인 새빛 발행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타워 18층
편집인 법무법인 새빛 TEL 02 3448 0030 디자인 오즈카뮤니케이션 02-515-3681 www.sebitlaw.com

기고문

새빛의 꿈과 비전을 사랑하며



조은시스템 김승남 회장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는 좋은 성공은 어떤 것일까?

자기가 이룬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이런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법무법인 새빛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전문가들이 이루는 새빛의 미래를 생각한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뛰어 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들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충실히 실행하면서도 지식나눔 실천인 포럼을 통하여 에너지 넘치는 미래를 설계하고 독서와 독후감 공유를 통하여 내공을 튼튼하게 다지며 사회 공헌에도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설렌다. 새터민 자녀들을 후원하고 백일장을 통하여 선정된 아이들을 뒷받침하여 법률가로 육성하고 민족통일 이후의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고 준비하는 그들의 정성이 열매를 맺는 날들이 기다려진다.●

새빛의 활약

위지트주식매각(M&A) 및 work-out 조기종결자문 법무법인

새빛은 소프트포럼,다원텍 및 위지트의 9개 채권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지트의 발행 주식 31,002,000주(지분율 83.8%) 및 경영권을 제이더블유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247억원으로서 2011년 12월 14일에 본거래에 대한 이행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위지트는 신한은행 등 9개 채권은행으로 이루어진 채권은행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work-out)가 진행 중이던 기업으로서, 법무법인 새빛은 위지트의 work-out 조기 종결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도 수행하였으며, 2011년 12월 14일에 위 주식매매거래의 이행종결과 동시에 위지트의 work-out 절차도 조기 종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본 거래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팅크웨어 주식인수(M&A) 자문 유비벨록스는 2011년 11월 25일

팅크웨어의 최대주주로부터 Tingkware의 발행주식 1,145,519주 및 경영권을 27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유비벨록스의 법률자문사로 위 거래에 참여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실사, 협상, 계약체결, 종결, 기업결합신고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위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대상회사인 Tingkware는 '아이나비'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로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및 LBS(Location-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이며, 유비벨록스는 모바일 플랫폼/솔루션/서비스 및 스마트카드의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mbedded SW 전문회사로서 최근 미국 경제 전문 주간지 Forbes가 발표한 '2011 아시아 태평양 200대 유망 중소기업(200 Best Under A Billion)'으로 선정된 16개의 국내 코스닥 기업 중 하나입니다. 양사는 금번 M&A를 통하여 양사가 보유한 고도의 기술력 및 경영능력, 노하우 등을 교류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기술력을 구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카 시장에서 진일보된 기술력과 새로운 Business Model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무법인 새빛은 이러한 의미 있는 M&A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빛, M&A 법률시장에서 9위 차지

인베스트조선이 2011년 12월 1일에 발표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국내 M&A 법률자문사 순위에서 법무법인 새빛이 발표(announced) 기준 9위, 완료(close) 기준 9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올해의 전문가 | 김민희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는 새빛의 M&A 팀장으로서 부서를 만든 지 2년만에 2011년 11월 인베스트조선 리그테이블 M&A 분야 법률자문 순위(건수기준)에 팀을 9위로 올려놓는 과업을 발휘하였습니다.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미모면 미모...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녀는 이시대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새빛에서는 닉네임 "김여사"로 통하며 선배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새빛의 슈퍼스타이기도 합니다.

김여사는 엄마로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셨는데, 올해 고3인 따남(김혜인)이 수능시험에서 단 한 개만 틀려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꾸꾸는 국가급 인재! 혜인양의 무궁한 발전을 새빛의 전가족은 진심으로 기원하며, 혜인양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응원합니다.



올해의 직원 | 권도연 차장

권도연 차장은 입사 8년차의 새빛의 개국공신으로, 새빛의 회계/재무/송무/경영지원/일반관리/직원교육 등의 모든 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8년은 새빛과 권도연 차장에게 똑 같은 무게의 도전과 시련이었습니다.

특히 2011년 새빛의 법인 분리, 투자금융사업부/일본사업부/중국사업부 신설, 법무법인 청구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슈들을 치분하고 정확한 그녀의 성격처럼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온 새빛의 모든 업무부서는 현재 새로 선임된 CFO를 중심으로 조직화,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는 일반관리와 직원교육에 특히 매진합니다. 가정에서는 무지 잘나가는 남편과 이쁜 딸(차수민)을 살뜰하게 보좌(?)하며, 휴가 때마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양가를 모시고 효도여행을 가는 현모양처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를 보면 가화만사성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지세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한 그녀의 자세는 모든 고객과 새빛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합니다.

※ 올해의 전문가와 올해의 직원에게는 2012년 일주일간의 특별휴가(휴가명 : "잘했어요 휴가")와 소정의 포상금(10만원)을 드립니다.

새빛 뉴스



여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개최-역사란 무엇인가 저자 신봉승

법무법인 새빛은 2011년 12월 14일 오전 7시 30분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문묘 18현'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신봉승 선생님을 모시고, '15세기 조선의 르네상스'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1회 새빛 백일장 시상식 개최 법무법인 새빛은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새빛 백일장 '나의 꿈'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결과 강현욱 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간호사'를 대상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2011년 12월 14일 오전 9시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제1회 새빛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총 11명의 수상자들(대상 : 강현욱, 금상 : 심진성, 장지석, 은상 : 임철, 방은성, 조항미, 동상 : 이서연, 오은정, 조선희, 이은화, 장순금에게 상장(상패) 및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교육 개최 법무법인 새빛은 2011년 12월 5일 오전 8시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변호사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백화점인재개발원 김경호 원장을 초청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마인드'란 주제로 사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새빛은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과 내부토론, 고객만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의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법무법인 새빛만의 명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중경 방문 법무법인 새빛은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로서 2011년 11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중국 중경직할시 대외무역경제지원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양강 신구 중한산업단지, 종신그룹 등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방문하였고, 이번 방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중국기업과는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2012년 3, 4월경에는 중경 양강 신구 중한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나 중국 자본의 유치를 모색하는 기업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새빛 지하철 광고 개시 법무법인 새빛은 '이피피휴먼네트웍스'의 강우석 대표님의 지원으로 2011년 12월 8일부터 지하철 1, 3, 4호선 역사 내 승강장 및 대합실에 1일 180회(1스크린 당)이상 표출이 되는 동영상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빛 일본 현지사무소 2012년 2월경 Open 예정 법무법인 새빛은 한중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간 해외 법률자문 및 IB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일본에 새빛 현지사무소를 2012년 2월경에 Open 예정입니다. 최근 전세계의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일 기업간의 B관련 비즈니스(M&A)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한일 양국기업 관련 법률 자문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의 일본 사무소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빛 로비 확장공사 법무법인 새빛은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포데스크와 로비 확장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인포데스크의 위치를 변경하여 로비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문 고객들이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컬러를 이용하여 로비를 단장했습니다. 동시에 LED 전구를 이용한 새빛 로고를 통해 고객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롭게 빛나고 싶은 새빛인의 소망을 담아 새빛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고객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인사

법무법인 새빛은 2011. 12. 20. 중국대성법무법인의 고급고문으로 계신 배우성 고문님을 영입하였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83학번)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1990)
- 중국 북경대학 법학원 방문학자(1993-1994)
- 한중법학회 이사(1995-현재)
- 한국무역협회 중국법률자문위원(1998)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전문위원(1998-2008)
- 정보통신부 이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2001)
- 한국벤처협회 전문위원(2002)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위원회 자문위원(2002)
- 중국대성법무법인 고급고문(2010)



구성원 소식

등기팀의 송승완 본부장은 2011. 12. 24. 둘째(송사우)를 득남 하였습니다. 2011년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새빛의 법률세상_하나

새빛이 이겨서 기쁜 사건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유치권부존재확인)



이석중 대표 변호사

사실관계

A은행은 회사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회사의 냉동창고 및 부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B은행은 같은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회사의 냉동창고 및 부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과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B은행은 수산물 관리를 목적으로 회사와 냉동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냉동창고를 점유하였다. 이어 A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회사의 냉동창고 및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경매)하였고, B은행은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 이에 A은행은 B은행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B은행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 저당권에 관한 법질서 또는 신의칙에 기하여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무법인 새빛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A은행의 소송대리를 맡은 새빛은 B은행의 상사유치권 행사는 회사 냉동창고 및 부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순위 근저당권에 앞서 회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저당권에 관한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정의에 반하는 점,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회사 냉동창고와 부지의 교환가치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할 것이라는 A은행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B은행의 상사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B은행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또한 B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여 A은행 승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의 의미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 및 법질서의 정합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바, 이 판결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를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한 최초의 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새빛의 법률세상_돌

새빛이 저서 아픈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손자성 변호사

사실관계

A리스회사는 B와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 체결하고 시설을 대여하여 주었고, C는 B의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가 리스료를 연체하였습니다. 이후 A리스회사의 B,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 C의 재산을 조회하던 중 C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친인척인 피고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빛 및 피고의 주장

법무법인 새빛(원고)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C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책임 재산을 회피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피고가 제시하는 차용증을 제외하고는 피고와 C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일지와 차용증상의 일지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시 토지보상비로 받은 금원 등을 현금으로 C에게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차용증 원본이 존재하며, C로부터 이자도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C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및 평가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지만, 이행소송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가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행소송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의 소의 보충성'으로 인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 5640 판결 참조)는 문제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부에 대한 증거를 지배하고 있는 피고가 아니라 반대의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1998년경 작성되었다는 차용증만이 존재할 뿐 아무런 금융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기 않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그 진위 여부를 다투려고 하였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는 더욱 증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소제기 등의 진행을 할 것입니다.●

※ 본 사건은 승률 96%의 새빛 최고검투사인 손자성 변호사가 2011년 유일하게 패소한 사건입니다.

새빛의 법률세상_셋

관심이 가는 사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작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

사안의 개요

甲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乙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甲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

판결요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甲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乙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乙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甲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甲 회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乙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甲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

판결의 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할 뿐 본 사안과 같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달라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1. 12. 2 시행)

주요 개정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동의를결제를 도입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경쟁질서 회복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동의를결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된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한 시장방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시장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의를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은 신청인의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동의를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개시여부가 결정되면, 통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동의를결의 사후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동의를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제처 '최근 공포법령'을 참고한 것입니다

노동법의 제문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종태 변호사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먼저 근로자일 것을 당연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①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②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문제가 되는 사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 생명보험회사 외무원, 신문사의 광고외근원, 지사장, 골프장 캐디, 학습지 상담교사,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원 등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문제가 되는 사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지입차량 운전수 겸 차주, 레미콘 차량 운전수 등

3. 현실적으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는 주로 계약의 종료 후 해지를 당한 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해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나 사용주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것인지, 회사가 그러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성 여부는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명목으로 한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이나 노동조합활동금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며



사철원 변호사

특수목적법인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CRV,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CRF,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ABS, 「산업발전법」에 의한 CRC,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위와는 달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 PFV]는 독자적인 관련 법령의 제정없이 2004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되었습니다. 본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축은행 등 프로젝트금융투자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는 각 법률요건상의 제한 및 운영형태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법인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PFV 이상으로 더 적합한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이라는 실체법은 현재까지 시안으로만 나오고 있을 뿐, 그 제정공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법인세과에 대한 질의해석절차를 통해서 공식되어온 국제정예규 자료 등에 의하여 겨우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PFV의 설립조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의 겸빙여부, PFV가 신탁의 수익자인 경우의 세무관련 문제, PFV의 주택건설사업자 요건 충족여부 등 다양한 법률이슈가 아직도 명확히 해결되지 아니한 채, 해석적으로 유추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PFV의 '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

약 동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등이 PFV의 이사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PFV설립의 '출자자와의 신용분리'라는 본래의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고, 'PFV'의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및 자금관리가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PFV는 현재, 금산법상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부실화된 PF대출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KRNC,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이 PFV의 주요출자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앞서 염려한 것과 같이 동 회사의 직원이 PFV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의 역기능이 발생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동 PFV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자산관리자 및 자금관리자의 자격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단계에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법 해석상의 제한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이 제정되고, 관련 법령 등이 구체화되어 동 PFV의 설립요건, 세제지원의 내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기타 예외규정 등이 보다 더 상세히 규정되어 향후, 동 PFV에 의한 프로젝트금융이 더욱 활성화되어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이고 공적자금을 의한 부실금융의 정상화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할 및 현물출자 과세제도 개정(안)에 대한 小考



장재명 회계사

1. 현행 과세제도 내용

(법인세법 제47조내지 제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내지 47조의2(현물출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는, 양도법인이 자산(주식포함)을 타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있어 ①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취득한 양수법인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양도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고 양수법인은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②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시점에 양도법인에 양도차익 전체를 과세하고, 양수법인은 해당 자산을 시가 취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과세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이러한 현행 과세제도 내용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법인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양수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수법인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해당 자산의 미래 양도시점에 양도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이 양수법인에게 다시 한 번 과세되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양도시점에 모두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자산의 장기보유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세금의 납부시기 연장으로 인한 과세이연 효과보다 이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상기 조세특례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법개정(안)(2011.9)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대한 세법개정(안)(2011.9)에서,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양도법인의 주식처분비율이나 양수법인의 자산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양도법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인해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개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사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와 향후 국내 PF사업에 관한 소견



최진석 회계사

최근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PF)¹⁾은 국내 금융권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써의 유용성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회적 혜택 제공이라는 순기능 측면에서 프로젝트금융 기법을 이용한 사업은 향후에도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프로젝트금융은 근대 PF의 효시로 알려진 1856년 수에즈운하의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것을 비롯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1970~1980년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자원개발 및 각종 사업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붐을 거쳐 현재까지 세계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도와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에는 90년대까지 주로 대규모 사업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그 활용범위를 넓혀 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주택 분양사업에 적극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에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세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자 PF 대출의 대규모 부실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자본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이 동반 부실화되고 이러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정부의 개입이 강제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의 원인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MBS²⁾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인 주택저당대출의 부실화, 이보다 근원적인 세계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기인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문헌들은 PF사업의 성공요건으로서 사업주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능력, 사업자와 채권자간의 적절한 위험배분(Risk Management), 프로젝트 경영진의 전문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PF 대출채권 부실화는 이러한 요건 중에 대출기관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였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자와 채권자의 사업 타당성 분석능력 및 적절한 위험배분(채권자가 실질적인 대부분의 재무위험

부담)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 사태를 지나면서 국내 금융기관은 부동산 PF사업에 대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일반 주택분양 PF사업에서는 사업자에게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10 ~ 30%를 요구했다면 현재의 추세는 위험배분을 위해 40% ~ 5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러한 현상이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사업성이 우량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수행 자체를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트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PF 사업자는 과거에 비해 더욱 정교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위험배분 측면에서 자본 충실화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 충실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또는 제3의 공동사업시행자와의 사업 제휴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최근 교착에 빠진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사들이 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국내 PF사업에서 시행사의 사업비에 대한 일부 초기투자자와 시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분양보증 제공이라는 것이 상식이었다면 이를 벗어나 복수 또는 다수의 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구조의 구현이 PF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금융 자문사의 자문서비스 또한 국내외 적격한 투자자 발굴을 통해 자본의 충실화에 기여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중점을 두어 프로젝트 자체의 자생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PF사업자 및 자문사 모두가 프로젝트의 건실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프로젝트금융의 순기능이 시장에서 발휘되는 본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 기업의 현금흐름과 완전히 분리하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융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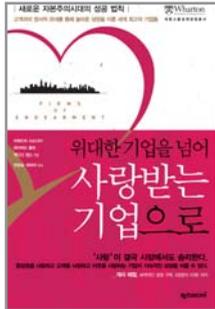
2)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 증권.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새빛인의 서재

12월 추천도서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Firms of Endearment)

럭스미디어 출판, 라젠드라시 소디어·데이비드 울프·잭디시 세스 지음



책 서문에도 있듯이 이 책은 동료에 대한 강한 유대감으로 행동하는 리더들을 위한 승리의 노래이다. 소비자들은 기업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지만 그럴 대상이 없을 때는 가격과 편리성을 찾게 된다. 이 점을 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애정, 사랑, 기쁨, 진실, 공감, 연민, 송고함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로 비단 비즈니스뿐만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될 수 있다.

월마트를 이긴 코스트코, GE의 하락하는 주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대비되는 애플과 구글의 성장, GM에 대한 도요타, 혼다, BMW의 도전 등등을 목격하고 있으면, 특히 인터넷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민중의 파워가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현재 우리의 무게중심을 타인, 어쩌면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저 밖의 세상에게까지로 옮겨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사랑받는 기업의 리더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 심리적인 성숙, 영혼의 관대함으로 대표되며, 그 리더들이 이끄는 기업은 원칙을 고수하는데 엄격하고 단호하다. 용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용기는 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나온다. 사랑받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닌 이익 추구 이상의 의미 있는 활동에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한때 효율성을 추구하며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유명했던 GE의 전 회장 잭웰치의 변화된 일갈이 무겁게 다가온다. '이 시대는 지역사회가 쇠퇴하고 붕괴하는 상황에 냉담한 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캐논의 고 가쿠 류자부로 회장이 교세이(共生)에서 강조하는 협력의 정신에서 배운다. 경영진과 직원의 협력을 넘어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경쟁사, 정부에게까지 그 협력이 확장되어 세계적인 불균형과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새빛의 실력과 문화가 성숙해지길, 새빛인들로 하여금 더 큰 가치를 추구하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아름답고 특별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결합적이고, 생산적이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가진 기업의 직원들은 그 문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섬기는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믿고, 언제나 그들의 잠재력에 놀랄 준비가 되어 있다."●

새빛인의 서재

11월 추천도서

흑산

김훈, 학교재



흑산은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무너져야 할 세상을 밀쳐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황사영 등 실존인물들과 육손이, 마노리, 박치돌 등 수없이 스러진 민초들의 인생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날날이 펼쳐져 허구로 구성된 소설임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이다.

형과 동생이 심지가 알고 허약해서 신앙이 자리잡을 만한 그곳이 못된다고 했던 약종의 진솔로 약전과 약용은 사형되지 않고 유배길에 오른다. 배반으로서 가능한 삶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이어진다. 공손하면서도 두려움없는 얼굴을 가진 황사영은 열여섯에 진사에 급제하고 빨래해서 풀 먹이는 일에도 복은 가득하다고 말하는 지혜로운 명륜을 아내로 맞아 정약현의 사위가 된다. 황사영은 처숙부인 약종으로부터 시공을 초월해서 스스로 근원이 되는 존재를 알게 되고 세상의 하중과 환란에 맞서게 된다. 세상을 부수려했고 부수어지지 않는 세상을 버리려한 죄, 세상 너머를 내다본 죄로 약종은 참수되어 두토막으로 나뉘었고, 황사영은 능지처참되어 여섯 토막으로 나뉘었다. 그들은 다만 하늘의 선한 뜻은 권력의 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일상의 땅위에 실현할 수 있음을 믿었다.

김훈 작가의 말의 단순성과 깊이는 때로는 머리가 도끼로 갈리지는 충격을, 때로는 송곳으로 가슴이 후벼파이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 간결한 사실의 적시만으로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문체다.

새빛은 사훈을 이 책에서 언급된 경서의 한 구절인 "必日新"으로 정하였다. 날마다 반드시 새로워진다. 작가에게 큰 빛을 졌다.

이 책을 쓰며 작가가 혼자서 견디었을 날들과 기진한 노동에 깊이 감사한다.

"...죽지 않기를 잘했구나.. 저렇게 새로운 시간이 산더미로 몰려오고 있으니..."

"배에서는 여기가 어디냐, 방향이 맞느냐, 언제 도착하느냐, 바람이 어떨 것이냐를 묻지 마시오. 그게 사공을 대접하는 법도요."●

새빛마당_하나

외규장각 도서반환운동의 선구자 故 박병선 박사님을 추모하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리고
외규장각의례를 145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큰 공헌을 하신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님이
2011. 11. 23. 오전 6시 40분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2009년 박병선 박사님이 직장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위해
수원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원 일동이 박사님을 직접 찾아보여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였던 일을 인연으로
그 동안 박사님의 희생과 업적에 대하여 늘 관심과 존경을 유지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지난 해 11월 안타까운 박사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역사학자故 박병선 박사님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자
전 직원이 추모의 글을 작성하는 한편,

새빛인들의 슬픔과 존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박사님께서 마지막 유지로 부탁하신
'병인양요'의 계속적인 연구를 위해 180만원의 기금을 모아
사업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새빛은
故 박병선 박사님을 비롯하여 국가와 문화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문화와 역사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공익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깨우쳐준故 박병선 박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법무법인 새빛 임직원 일동

※ 故 박병선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새빛과 함께 대한민국의 잊혀진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헌신해 주실 역사가를 찾습니다.
문의 | 김지영 변호사, jykang@sebitlaw.com

박병선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을 통해...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에...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니...
- 김지영 올림 -

박병선 박사님이 후배를 위한 헌신적 노력과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기음 같이 세기며 더 지대한 후배를
위한 한나운 인연이 뒤속 하였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경권 올림

박병선 박사님. 서정희-
이 시에너 귀감이 되시길
진짜 몸가짐은 삼강사이다 삼강사
자살이심네. 영원이기야 하겠습니.

"적지대본" 박병선님을 기리니..
박사님의 "외규장각 의례"를 145년
만에 한국에 귀환시키신 산신삼인
대한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이 존경
하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자영 올림 -

대선민국의 외과 학은 정지에게 아인
역사에서 비로사신 사정보 용수
실근심에 보려신 박사님이 위대한
받들서 존경하는 국가가 되길 기원하
니사. 박병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강새 올림 -

박사님의 역사 의욕과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사랑은
병든토록 잊지 않고 고이 받들겠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원복 올림 -

국가 동맹권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 지현진 올림 -

박사님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 김원희 올림 -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저희 후배는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배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숭고하신
뜻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영영을 기원합니다
- 임종래 올림 -

박사님께서 남겨주신
귀중한 유산은, 감동계승
기여, 우리 민족이 역사적
자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유가족입니다.
- 박정호 올림 -

조국이 외면했던, 그러나 끈은 화교의 집념과
민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애민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애국심으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직지심경"과 "외규장각도서"를
조국의 품에 안기고 민족 자존심을 훌륭히
지켜셨던 우리 양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지가
않습니다. "난 재지만 나는 날을 보리라"
어니려하셨다"라는 반역 전통 선조들의
사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박병선 선생님은 평생을 민족 자존감과
소중한 자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용서받으려 헌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외롭게 사위셨음에
대원 한도 도움도 주지 못했던 장부와 국가가
바른 재가 실도 있는 애환만리라는 것이 부끄러우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한번 박사의
감사드립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 문성원 올림 -

딱 그랜전 이암때쯤
병원에서 박사님을 보았는데,
통해는 박사님 반세 소식은
뉴스도 접하게 되어
잠지 않게 놀라고 가슴 아렸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고된 헌신 대신
평안한 생활만이 가득하길 빌며.
앞으로 저희가 박사님 뜻을
새겨 내겠습니다. - 강자영 올림 -

공경히 약속한 사명을 해내셨습니다.
차량소진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크기의 유산의 소중한 일깨워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귀식을 기원합니다

- 차민철 드림 -

복사님의 생전 업적을 기억하며
복사님의 숭고한 삶이 후손에게까지 전될수 있도록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영웅히 노력하셨었다.
많은 영웅들을 주셨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비인근리-

우리의 뿌리를 찾는 ~~추적~~ 추적단, 가슴에
새겨 새겨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김우근님 드림-

우리조국과 문화유산을 잊지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박사님이 평생 이루고자 하셨던 큰 꿈이,
후세에도 영원한 것이나 믿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함영욱 드림-

선유초과 외면했던 우리 역사 연구와
해의문화재 반향 운동에 일생을 바친
박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의 뜻을 아꼈던 우리 새겨
우리 역사, 문화재에 영의 광임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셨구나
-성이경 드림-

작지라는 우리문화유산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것을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노력하셨던
진정할 영웅 박병선 박사님
박사님의 업적을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근영 올림

머나먼 땅에서 고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박사님의 깊은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사님의 노고으로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 하겠습니다.
- 박창우 올림 -

우리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평생은 최사하신
우리의 문화유산을 뉘 알기위해 노력하신 박병선,
박사님의 업적과 재능을 기억하고 재능을 알리는데
역사에 부채질이 없는 후세의 위기 위해 탁월 노력
하셨습니. -이재현 올림-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그 자랑스런데 대해
알게되었고과다 누리고 사귀어 왔던
자랑스런게 해내고 후대에 훌륭한 기념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경원 드림-

대한민국 역사에 큰 공헌을 세우신
강직한 애국자이신 박사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우근 드림-

박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업적을
받아있는 후손들이 저처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저처럼 주세요. -송지영 올림-

박사님이 평생을 바치셨던
'우리문화유산을 우리 품에
갖는 일'. 아마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그 유산은
이제는 지켜야 할 '이 저희가
박사님께 받은 숙제입니다.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빌겠습니다 -강민영 올림-

후대를 위해 남겨주신 박사님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위해 차임스런 문화유산들을
잔 지키며 사이각수 있도록
힘을 노력하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진석 올림-

박사님이 아니셨다면
머나먼 타국 땅에서 먼저 쌓인 책으로
알려진 수 있었으면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이러) 박사님은 이세상인간에게서지만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남아계시게이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영민-

숨은 역사를 바루잡기 위한 박사님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지 않았을 그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권영민-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노력하신 박사님의 업적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원영-

박사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저처럼만 아니라
다른세대들도 저와 똑같은 40여의 손때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기간의 업적
가슴에 새긴 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소영-

박사님의 고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저 또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정화-

박사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속에 오래오래 살아계신
것입니다
-유필산-

각저대로 박병선 박사님의 애국심과
헌신적, 역사적, 영웅적, 투쟁적 정신
위해 믿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성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을 존경하고
박사님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연희-

박사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었던 정지삼체활자,
다른 많은 외국장각도사들은 몰랐을것입니다. 기리는 것이라 생각할
박병선박사님은 우리 조상들의 재능 지켜, 니다. -정훈-
되찾기 위하여 누구보다 가장 많이 노력하셨습니.
박사님의 타계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기욱-

박사님의 노고로 삼가고인의 문화유산이
돈아오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수고와 눈물, 끈기과 헌정 잊지 않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지현-

이것까지 세기 여러곳에
확립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기
명품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남은 우리
유산을 되찾아야 할것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경연-

우리의 귀중한문화재 반환을위해
박사님의 오랜노력 잊지않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신혜-

박사님의 노고으로 저처럼 외국장각 되게
저희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기쁘고 감사
드립니다. 약력의 역사에 큰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놀라운 업적과 노력들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평안히 계시요.
-박정희-

새빛마당_돌

새빛의 가족이 되면서...



최소영 사원

러브레터에 글을 쓰는 순서를 정하기 며칠 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나에게 한 번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었다. 그때는 입사한 지 겨우 한달을 지나는 시점이었기에,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쓸 내용이 없다며 웃고 지나갔었다. 그랬던 것이 제비뽑기로 1번을 뽑게 되어 어찌 되었든 내가 먼저 쓰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 접힌 종이를 펼쳤을 때의 황당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무튼 '글'이란 것을 써야 한다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히고 머리 속이 감잡해진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로는 자기소개서 빼고는 제대로 된 글을 써본 기억이 없다. 그 흔한 블로그 하나 없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곳에 무엇을 쓰면 중간은 갈까 싶은 생각을 하다가 신입의 특권이기도 한 회사생활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다.

대학교에서는 본 전공도 복수전공도 외국어 과목이었기에 입사 후 하게 된 일들이 하나 같이 새로웠다. 내 전공은 경제나 경영처럼 실무적인 내용이나 정치 같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곤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니는 내내 전공이라는 틀에 갇혀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 이를테면 회계나 법 관련 용어들을 접하게 되면서 내 안의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날마다 배우는 일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는지라, 오히려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를 탐험하는 기분이었다. 보통은 이런 느낌을 대학생 때 여러 경험을 하면서 느끼곤 할 텐데 나는 사회인이 되고서야 깨닫게 되다니 참 늦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회사가 강남에 있는지라 이 쪽에 올 일이 많아졌다는 게 시야가 넓어졌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명동, 신촌, 홍대 등 주로 지도를 봤을 때 중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벗어나서 논 적이 없었다. 사실 강남은 학원 때문에 몇 번 온 거 빼면 온 적도 없다! 왜냐하면 '집에서 머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취업준비생 시절에도 되도록이면 직장을 집 근처나 사대문 안에서 구하려 했는데 그러던 것이 지금은 강서에서 강남까지 서울시를 횡단하니 세상일이란 참 알 수 없는 일들 뿐이다. 대신에 지금은 18층 내 자리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깥 경치를 감상하며 저런 멋진 건물도 있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강남의 맛있는 가게를 섭렵해보자 하며 이곳저곳 들리기도 하는 등 나름 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되리란 걸 두달 전의 나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벌써 입사하고 나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딱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금세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이번 2011년, 특히 후반기는 대학교 졸업, 이사, 취업 등 커다란 사건이 연이어 터져 정신이 없었다. 이제 한 달 후면 올해가 마무리 된다. 사회인이 되어서 보내는 첫 연말은 대학생 때 보내는 연말과는 다른 느낌일까? 새빛인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올 한해 마무리 잘 끝맺으시고 다가오는 2012년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마음 속 깊이 바란다.●

새빛마당_셋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소감문



성미경 변호사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장님의 강의로 진행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마인드 교육'은 단지 고객응대를 어떻게 하라는 식의 강의가 아닌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강의로, 지금까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법인 직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서비스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강의가 아닌가 한다.

주어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부리, 손톱과 날개를 뽑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솔개와 주위 택시업계의 비난과 직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4가지 인사운동'의 실천을 통해 최고의 고객서비스 기업으로 우뚝 선 MK 택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킨 도쿄 디즈니랜드의 사례를 들으며, 다른 법무법인과는 차별화된 명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기혁신을 통한 고객중심의 사고전환, 서비스 실천을 위한 꾸준하고 끊임없는 노력,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권도연 차장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오늘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실천을 위한 마음가짐 또한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고객만족, 고객감동!! 그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일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에서 비롯된다. 강의 내용중 온기에 젖어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지는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한 삶에 길들여진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새빛 또한 변화의 시대, 무한경쟁 시대에 서있는 지금 좀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법률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새빛의 핵심가치중 하나인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며 진심을 다할때 그 진정성은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 생각된다. 새 삶을 살기위해 반년의 시간내내 발톱을 뽑고 부리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다시 일어서 솔개처럼 고객이 있고, 내가 있다는 마인드로 새로운 변화와 서비스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빛마당_넷

12월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소감문

신봉승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조은결 변호사

르네상스...

르네상스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유럽 중세 신 중심의 사고와 통치로 인한 암흑기를 극복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이성, 합리적 사고를 신뢰하고 문화, 예술적 혁신을 이룩한 시기를 일컫는다는 정도였다. 게다가 르네상스라는 화두를 음미해 본지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다가 르네상스가 '조선왕조 어디쯤이었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여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지식인의 포럼이 열리기 전 포스터에 적힌 조선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을 힐끔 봤던 터라 막연히 정조의 이야기가 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포럼 강연자이신 신봉승 선생님의 인상은 매우 친근하고 자상한 할아버지 같았는데, 강단 앞에 서는 순간 부드러운 날카로운 지성인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오늘날 잘못된 국정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시며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시행하였던 상피제도, 전량법 등 정치체리의 사전 차단 기능을 하는 훌륭한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포럼은 시작되었고 흥미로운 강연 서두에 이내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문 제점과 과거의 훌륭한 제도라는 두 단어가 오버랩되면서 역사를 통해 정치계의 고질적인 부정을 방지, 해결하는데 적용 가능한 과거의 탁월한 제도들을 연구, 발견하여 입법 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될 정도였다.

오늘 포럼을 통해 알게 된 세종대왕의 업적들은 새삼 나를 각성하게 하였다. 정치 외에도 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글을 창제, 조선의 모든 악기와 국악 정비, 작곡한 곡은 약 200여 개에 이르며, 신분과 무관한 인재 파격발탁으로 천재 과학자 장영실을 등용하여 과학분야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삼강행실도를 발행하여 섬세하게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제시해주며 백성을 곁속케하신 분이러니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인격적 대상으로 바라볼 때 존경과 사랑을 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종대왕께서는 문화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높은 자로서 겸손히 낮은 지에 임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지극한 백성 사랑을 문화 혁신을 통하여 친히 실천하셨던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르자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다.

신봉승 선생님 말씀대로 영국 민족에게 인도와도 비꾸지 않을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우리에게 온 세계와도 비꾸지 않을 세종대왕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빛마당_다섯

새빛 복지이야기

법무법인 새빛은 직원 및 전문가 개개인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를 통한 잠재적 능력개발이 법인 성장의 최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교육 및 외국어 관련 교육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미경 변호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개설한 NSI 제8기 녹색성장 CEO 과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및 녹색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 간 상호교류를 위한 과정으로서 1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산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관계로 사실상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업 후 이어지는 수강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수강 동기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에 수업이 있는 목요일이 내심 기다려지는 때도 많았다.

함께 수업을 듣는 수강생으로부터 이런 수업이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물론 수업내용이 지금 당장 변호사 업무와 직결되어 큰 성과를 내는 일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러나 법률지문 및 소송 업무도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법률 자체의 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변호사 업무의 영역이 전통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점차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녹색성장 CEO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여러 간접 경험 그리고 강의를 통해 맺은 인연들은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장재덕 회계사

법무법인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로서, 세무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회계적인 측면이 아닌 법률적인 측면을 보강하고자 하는 비램을 항상 가지고 있던 중, 법무법인 새빛에서 학비지원을 받아 2010.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전공)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기업,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법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고객 여러 분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빛마당_여섯

속 속 새빛 영어



김근우 변호사

자유로 해석되는 “Liberty” 와 “Freedom”은 보통 같은 뜻으로 쓰이는 명사지만, 라틴어 “Libertatem”에서 유래된 “Liberty”는 구속이나 지배 없이 개인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Freedom”은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자유 등 주어진 자유를 즐기는 상태를 의미할 때 쓰인다.

Liberty 자유

You are at **liberty** to do what you want.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Give me the **liberty** to know, to utter, and to argue freely according to conscience, above all **liberties** (John Milton)

어떠한 자유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양심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존 밀턴).

Freedom 자유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21조 1항)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

Freedom of contract 계약의 자유



제1회 새빛백일장 | 대상작

마음을 어루만지는 간호사

여명학교 강 현 옥

저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하는 날인 10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남한에 와서야 제 생일이 '개천절'임을 알았고, 단군의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단어도 이곳에 와서야 배웠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제 소명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운명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끈기와 노력을 강조하시는 근면하신 아버지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늘 어려운 이웃을 가족처럼 도우셨던 어머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따스한 성품을 지닌 부모님 밑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성실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생일인 개천절과 홍익인간의 뜻은 몰랐지만, 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뜻을 몸으로 체득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특히나 생각나는 일화는 인민학교 시절 때의 일입니다. 향심이라는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수업도중에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업고 평평 울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배급이 일시 중단됐던 그 시기엔 갑자기 죽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진료를 기다리는 내내 친구가 죽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으론 아파하는 친구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정신없이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중년의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या, 걱정 말거라. 다 괜찮아질 거야. 대신 친구가 무사히 돌아오면 더 잘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더 이상 친구가 죽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오랫동안 제 옆자리를 지켰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 분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꼭 아픈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친구가 무사히 교실로 돌아온 후, 제 마음 속엔 하나의 작은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되고자 하는 강렬한 꿈은 사람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간호 양성소 2년제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식량난 등의 이유로 교육이 붕괴된 현실 앞에,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아픈 사람을 돕도록 실력을 키울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이지만 용기를 내어, 2007년 1월에 탈북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한에서의 모든 것이 낯설었기에 저는 수녀님들께서 운영하는 '꿈사리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비비아나 수녀님을 만났습니

다. 그분은 제게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꾸짖어주시고 때로는 품어주셨기에 제가 낯선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양성소를 다녔던 제 경험을 들으시고는 간호사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가도록 격려하셨고, 직접 간호조무사 학원도 소개해주셨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실력 있는 간호사로 더욱 발전하고자 간호대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남을 돕는 모습을 직접 제게 보여주셔서 그런지, 저는 남을 돕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돕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는 북한에서부터 간호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붕괴된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계를 느낀 저는, 꿈을 실현시키고자 새로운 터전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버겁기도 했으나, 간호사가 되고픈 제 꿈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과 새로운 사회 적응을 위한 저만의 방법으로써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예로, 편의점, 병원, 음식점 등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특히 제 꿈이 간호사인 만큼 병원에서의 실습은 제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간호학을 1년 동안 배웠지만, 외래어와 한자어가 많은 남한의 언어는 공부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이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꿈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저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낮에는 학원, 오후에는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독서실을 가는 등의 성실한 삶을 보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009년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받으니, 저도 이곳에서 어엿한 간호사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성실한 공부는 저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기보다는 노력으로 부족한 실력을 다듬어가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에 보다 탄탄한 실력을 쌓고자 간호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보살피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예로, 저는 명절이나 생일 그리고 아플 때, 더욱 외롭고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일기를 쓰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간호사가 될게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날, 멋진 제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일기를 쓰면 어머니를 만나는 기분이 들기에 제 마음을 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슬퍼도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보다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힘을 얻듯, 저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환자화 환자 가족들의 마음까지 진심으로 보살피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 소중한 옛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을 제 가족처럼 여기며 보살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로 도약해, 아프리카나 중남미와 같이 가난한 나라의 아픈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던 고마운 손길들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따스한 손길과 마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저의 꿈이 하루 빨리 오리라 확신 합니다.●

새빛마당_여덟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새빛 러브레터는 새빛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24시간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땐 나에게만 의미가 되어준 글이지만, 이곳에 글을 보내주시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원고마감

어느 때고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원고종류

1. 살아가는 이야기

1,000자 정도(일기, 수필, 편지 등/필자 사진, 프로필)

2. 추억의 사진

- 사진과 간단한 사진 이야기(사진 보낸 이의 프로필)

3. 향기나는 이야기

- 세상을 살아가며 겪었던 훈훈한 인정,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글이면 좋습니다.

4. 짧은 글 긴 감동

- 짧지만 감동을 주는 체험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작은 감동을 글로 써 보내면 됩니다. 5매 수필, 손바닥 에세이도 좋습니다.

5. 기타 알리고 싶은 소식 및 광고,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시, 수필 등의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새빛 러브레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정기 자문사 및 고객들께 광고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자이벤트 | '새빛'의 이름으로 2행시를 지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담당자 | 상미경 변호사(mksung@sebitlaw.com)

유명산 팀장(msnyu@sebitlaw.com)

새빛마당_아홉

인재채용

모험가를 찾습니다.

경력 전문가

새빛은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M&A, 파이낸스, 채권 증권 등 금융분야 전문가와 중국어에 능통하신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신입 전문가

새빛은 2012년 신입 소속변호사를 채용합니다.

지원자격 및 조건

1. 필요요건 (신입 변호사에 한함)

-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 법무관 제대 예정자
- 로스쿨 수료 예정자

2. 우대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자 또는 중국어 내지 일본어 유창하신 분은 우선 면접기회를 드립니다.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공통사항)
2. 에세이 1편 (신입에 한함. 평가비중은 전체의 60%)
 - 반드시 변호사 윤리장전 제1조에 나오는 단어들을 활용할 것.
 - 형식과 내용, 분량 제한없음

▶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3. 기타
 - 지원서류는 E-mail(dykwon@sebitaw.com)로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1. 담당 | 권도연 차장
2. 전화 | 02-560-5123
3. 팩스 | 02-3442-6298

전국민 상생의 관심프로젝트

‘동반자’

따뜻한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 지판을 두드리는 기지도 참 쉽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실천하기엔 요원하다. 일단 도와줄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또 만나야 한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이쯤 되면 모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안 돼~, 언제, 어느 세월에?”를 외치고 말 것이다. 전국민이 상생하는 관심프로젝트 ‘동반자’가 출범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칫 ‘이웃사랑 의지박약’에 빠지기 쉬운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는 은근히 타오르는 숯불, 즉 잉겔이 다들 하나씩 있다는 걸 안다. ‘동반자’는 여러분 마음의 잉겔에 불을 댕길 것이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단 10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해야 한다. 대상자와는 꾸준히 연락을 해야 하고 1년에 한번 밥도 먹어야 한다. 말 그대로 지속적인 삶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라는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당신, 충분히 섹시하다.

동반자 1호 대상자 임금선 양(이문초 5학년)

7년째 여관방 생활 불구 “반장 한번 안 놓쳤어요”

형사였던 아버지는 사업하다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빚 독촉에 시달린다. 채권자를 피해 다니다 병마져 얻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대신 생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들 부부에게 희망이 있다. 바로 외동딸

임금선(이문초 5학년)양이 있기 때문.

하지만 늘 미안하다. 금선이의 주소는 OO여관, 빚쟁이들을 피해 살려다 보니 말그대로 여관방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어느덧 7년이나 됐다. 그나마 2년전부터 마음씨 좋은 여관 주인을 만나 월 60만원에 온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 된 게 위안거리다

“금선이가 집에 와서 일기를 썼는데 ‘난 왜 내 방이 없을까?’ 라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늘 엄마를 위로해주



고 밝게 웃는 아이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부방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나봐요. 그걸 해 줄 수 없는 부모마음은 찢어지지요(금선이 어머니)'
책상이 없어서 침대 위에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금선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지만 금선이는 오히려 불치병에 맞서 10년 동안 싸운 소녀 '이야의 이야기 '리터의 눈물'를 읽으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파올로 코엘료의 신작 소설에 열광한다. 음악과 체육은 어렵다지만 국영수는 '매우잘함' 성적표를 곧잘 받아오기도 한다.

“초등학교 와서 반장 한번 놓쳐보지 않았어요. 선거할 때 ‘싸움없는 반도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큰 일 없으면 스름 없이 나설 것’이라고 해서 반 친구들이 거의 찬성표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 덕에 더 잘해야겠다고 운동회 응원하다가 목이 쉬기도 했지요(웃음)”



이런 금선이의 꿈은 검사.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 도와주는 직업이니까요”

그런 금선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의 손길이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 이 글은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께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세상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재능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후원자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꿈이 이겨낼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줄 동반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동반자의 의무 월 3만 원씩 10년간 후원
 월 1회 동반자와 전화통화
 연 1회 동반자와의 식사

※ 모든 동반자의 의무는 법무법인 새빛도 함께 부담하며, 후원금은 전액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후원대상자별 동반자는 각 5명으로 한정됩니다.

동반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새빛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박진흙 변호사 02-560-5109 jhpark@sebitlaw.com

일 | 곱 | 번 | 재

實踐하는 知識人 포럼

새빛은 2월 22일 아침 7시 30분

메가넥스트 김성오 대표를 모시고

일곱 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은

고객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오니,

포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년 2월 22일 (수) 아침 7시 30분

강사: 金成五 (김성오)

(現 메가넥스트 대표 / 메가스터디 초,중등사업부 사장)

주제: **幸福한 成功** (행복한 성공)

제1회 2월 고영 (SCC대표, 딜로이트 인준회계법인(이사) '나비의 꿈' 저자)

제2회 4월 김승남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회장 '좋은 성공' 저자)

제3회 6월 신봉승 ('문묘 18현',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제4회 8월 유영만 (지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 교수, '곡산이 이간다' 저자)

제5회 10월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저자)

제6회 12월 신봉승 (문묘 18현,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타이마사지

Traditional Thai massage

[센타이마사지]



การนวดแผนไทย
Message

센 [SEN]
Thai Massage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건강을 늘 생각하는 센타이마사지입니다. 저희 센타이마사지관리사들은 다년간 숙련 된 전문 타이마사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님의 체형과 특성,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마사지를 해드릴 것 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고객님의 기쁨과 안락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센타이마사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การนวดแผนไทย
Menu **센** [SEN]

타이마사지

a. 60분 / 7만원

b. 90분 / 9만원

c. 120분 / 11만원

d. 집중프로그램 90분 / 12만원

발마사지

a. 40분 / 4만원

b. 60분 / 7만원

아로마전신오일마사지

a. 90분 / 12만원

b. 120분 / 15만원

※ 쿠폰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님의
전메뉴 15%할인 해드리겠습니다

การนวดแผนไทย
Map **센** [SEN]



절 취 선

새빛의 법률서비스는 고객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빛의 전문가는 유능하고 바릅니다.

새빛의 직원은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새빛인은 혁신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새빛이 보내는 러브레터 제3호

www.sebitlaw.com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타워 18층
TEL 02 3448 0030 FAX 02 3445 5533

논현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TEL 02 565 7188 FAX 02 542 7186

포항 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5 3층
TEL 054 242 3700 FAX 054 242 3702